

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4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이유

- 「농지법」이 개정(2009.5.27. 공포, 2009.11.28시행)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「농지법」 제44조가 삭제되어 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3. 조례폐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- 「농지법」 제44조 ~ 제48조 <<삭제>>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